#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52

발의연월일: 2022. 11. 15.

발 의 자:전해철·김홍걸·오영환

정태호 · 이학영 · 박상혁

최인호 • 이수진비 • 고영인

김수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또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가 아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 록 개정하여,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제20조제2항).

#### 법률 제 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 시"라 한다)의 장에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 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① ~ ④ (생 략)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 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한다)의 장에게-----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생 략) |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 -----국세 강제징수 또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할 수 있다.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